간추린 소식

2022 도로업무편람 발간

국토교통부 도로국은 「2022년 도로업무편람」을 발간하였다. 도로업무편람은 국토교통부 도로국 5과 1팀(도로정책과, 도로건설과, 도로투자지원과, 도로관리과, 시설안전과, 디지털도로팀)의 업무실적과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업무 요약서이다. 이번 편람은 일반현황, 업무현황, 사업추진현황, 도로부문 성과지표 보고서의 4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 일반현황에서는 도로업무 조직과 업무분장, 도로관계법령, 도로현황, 관련 통계·자료, 예산현황, 해외진출 및 R&D 추진현황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제2장 업무현황에는 국토교통부 도로국 각 부서의 담당업무에 대해 2022년 사업추진방향과 예산현황 등이 정리되었다. 제3장 사업추진현황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등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도로건설사업과, 그 밖에 민자고속도로, 대도시권 혼잡도로개선, 광역도로건설, 도로관리사업 등의 추진현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4장 도로부문 성과지표 보고서는 올해 처음으로 추가된 부분이다. 그간 도로사업 추진의 성과를 이동성, 접근성, 안전성, 미래성, 편의성, 도로투자 등 6개 부문으로 나누고 각 부문에 대한 지표를 선정하여 그래프와 함께 수록하였다. 도로업무편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 2022 도로업무편람

편람 다운로드 바로가기

용어해설

지하도로 구분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하며(민법 제279조), '구분지상권'이란 지상권의 하나로서, 건물 및 그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해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289조의2).

도로법 제28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도로가 있는 지역의 토지를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상이나 지하공간 등 도로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입체적 도로구역'이라 한다. 이 때,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상공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 시 구분지상권의 최소 범위 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을 따른다. 평면적 범위는 지하시설물 폭에 양측으로 각각 0.5m를 더한 폭과 해당 시설물의 연장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으로 하며, 입체적 범위는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의 상단 높이 및 하단 깊이에 보호층을 포함한 높이 및 깊이로 정한다.

▶ 구분지상권 최소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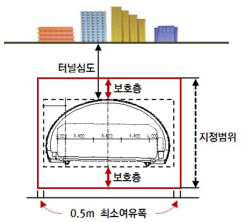

보호층 두께		
굴진방식	2차로 이하	6m
	3차로	6.5m
	4차로	7m
개착방식	0.5m	

자료 : 국토교통부, 2015, 안전강화,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법령 정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도로정책Brief의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메일링서비스를 통해 도로정책Brief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도로정책Brief 원고를 모집합니다.
도로 및 교통과 관련한 다양한 칼럼, 소식, 국내외 동향에 대한 여러분의 원고를 모집하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원고투고 및 주소변경 문의 : 044-960-0269

• 발행처 | 국토연구원 • 발행인 | 강현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 전화 | 044-960-0269 • 홈페이지 | www.krihs.re.kr

※ 도로정책Brief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토교통부나 국토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